

제 1462 호  
1989. 12. 20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고 건수  
 편집인: 공보관 유 천수  
 전화: 731-6111-3  
 인쇄: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35-3337

# 시 보

## 차 례

● 조 례		
제2533호	서울특별시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	3
제2534호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	3
제2535호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3
● 교육규칙		
제 345 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그소속기관에두는지방공무원의정원에 관한규칙중개정규칙	5
● 예 규		
제 518 호	서울특별시급수공사사무취급요령중개정요령	15

(이면계속)

일 짜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 고 시		
제 478 호	도시계획용도지구(풍치지구)변경결정	28
제 533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30
제 538 호	검사기준의지정기준및업무처리등에관한고시증개정고시	30
● 공 고		
제 902 호	서울특별시(구)공금수납대행기관지정	31
제 995 호	강남역부근도시시설제한공람공고	31
제1010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완료공고	32
● 구 고 시		
제 25 호	도시계획사업(시장)변경시행허가	33
제 91 호	도시공원정용(연장)허가	34
● 구 공 고		
제 5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34
제 103 호	도시계획사업(하수도)실시계획공람공고	34
제 104 호	도시계획사업(하수도)실시계획공람공고	35
제 151 호	매점위탁관리허가공고	35
제 495 호	도시공원시설(경구장)관리위탁공고	36
● 사업소공고		
제 23 호	퇴제관계직인변경등록및폐기	36
● 사업소고시		
제 35 호	하천의점용허가기간연장허가	37
제 36 호	하천의점용허가	38
제 37 호	하천의점용허가	35
● 사 령		

**조 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 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9. 12. 18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교육감 김 상 준 ㉞

◎서울특별시조례제2533호

서울특별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고척도서관란 다음에 증계도서관 및 목동도서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증계도서관	서울특별시 도원구 증계동 547-5
목동도서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심지구 6BL-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9. 12. 18

서울특별시장 고 건 ㉞

◎서울특별시조례제2534호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중 "건설관리국장"을 "주책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9. 12. 18

서울특별시장 고 건 ㉞

◎서울특별시조례제2535호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씩 부위원장1인을 포함한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기획관리실장이, 부위원장은 시의 기술심사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기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7인이내로 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소속 4급이상 공무원
2.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39조제2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타당성,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여산회계법시행령 제5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 공법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3. 시장·구청장 및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이상 30인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임명한다.

⑤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⑦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시장이 시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⑧제4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조(심의요청) ①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술심의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요청사항이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심의요청하여야 한다.

1. 영제3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그 전체공사의 기본설계(기본시설의 확장·보수등의 건설공사로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완료한 때 및 실시설계(위원회가 실시설계심의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완료한 때
2. 영제3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는 그 전체공사의 실시설계를 완료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와 기본설계·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①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심의 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심의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와 통지받은 자는 그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당해 건설공사 착공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건설공사의 질적향상과 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거친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평가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2항의 평가단의 구성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교육규칙**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9. 12. 18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김상준 ②

◎**교육규칙제345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표	
지방공무원 정원 총괄표	
총 계	6,978
별정직제	12
비상계획관(5급상당)	1
학생수련담당(5급상당)	2
속 기 사(6급상당)	1
예비군중대장(6급상당)	1
학생수련담당(6급상당)	2
전산처리사(7급상당)	2
사 진 사(7급상당)	1
학생수련담당(8급상당)	2
전산처리사(8급상당)	-
3급내지 9급 계	2,038
지방부이사관	1
지방의무부기감	1
지방서기관	14
지방의무기정	8
지방행정사무관	113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
지방사서관	24
지방의무기좌	7
지방보건기좌	2
지방전기기좌	1
지방도복기좌	1
지방건축기좌	4
지방행정주사	643
지방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2
지방사서	53
지방전산처리사	1

지방건축기사	23
지방전기기사	5
지방기계기사	6
지방토목기사	8
지방약무기사	2
지방간호기사	5
지방보건기사	21
지방행정주사보	420
지방사서보	93
지방전산처리사보	5
지방건축기사보	14
지방기계기사보	8
지방전기기사보	14
지방토목기사보	5
지방간호기사보	4
지방보건기사보	87
지방행정서기	294
지방사서서기	83
지방전산처리원	14
지방건축기원	6
지방토목기원	1
지방전기기원	2
지방기계기원	-
지방보건기원	3
지방보건기원보	1
지방행정서기보	10
지방사서서기보	28
지방전기기원보	-
기 능 직	4,925
지방통신장(6등급)	1
지방전기장(6등급)	4
지방기계장(6등급)	12

지방기계장(7등급)	42
지방전기장(7등급)	9
지방통신장(7등급)	7
지방기계원(8등급)	-
지방전기원(8등급)	-
지방기계원(9등급)	-
지방조무원(9등급)	-
지방통신원(10등급)	3
지방전기원(10등급)	39
지방기계원(10등급)	72
지방운전원(10등급)	508
지방교관원(10등급)	18
지방농림원(10등급)	13
지방보건원(10등급)	12
지방간호조무원(10등급)	4
지방사무보조원(10등급)	2,922
지방방호원(10등급)	1,259
교 용 직	3
1.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군	
○ 교육위원회(본청) 지방공무원 정원	
총 계	296
별정직계	8
비상계획관(5급상당)	1
속 기 사(6급상당)	1
예비근중대장(6급상당)	1
학생수련담당(6급상당)	2
사 진 사(7급상당)	1
학생수련담당(8급상당)	2
5급내지 9급 계	175
지방행정사무관	25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
지방보건기과	1



지방전기기과	1
지방건축기과	3
지방토목기과	1
지방행정주사	44
지방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2
지방전산처리사	1
지방토목기사	3
지방건축기사	8
지방전기기사	1
지방기계기사	2
지방보건기사	2
지방행정주사보	28
지방사서보	1
지방전산처리사보	3
지방건축기사보	5
지방전기기사보	2
지방기계기사보	2
지방토목기사보	1
지방간호기사보	1
지방보건기사보	4
지방행정서기	22
지방전산처리원	4
지방토목기원	1
지방건축기원	4
지방전기기원	2
지방보건기원	-
기 능 직	115
지방기계장(7등급)	-
지방전기장(7등급)	-
지방운전원(10등급)	20
지방교환원(10등급)	4
지방농림원(10등급)	1

지방사무보조원(10등급)	77
지방방호원(10등급)	11
○ 직속기관 지방공무원 정원	
총 계	1,217
별정직계	2
학생수련전담(5급상당)	2
3급내지 9급 계	458
지방부이사관	1
지방외무부기감	1
지방서기관	14
지방외무기정	8
지방행정사무관	25
지방사서관	24
지방외무기과	7
지방보건기과	1
지방행정주사	26
지방사서	53
지방약무기사	2
지방간호기사	5
지방보건기사	10
지방전기기사	-
지방기계기사	1
지방행정주사보	25
지방사서보	92
지방전산처리사보	2
지방간호기사보	3
지방보건기사보	13
지방기계기사보	-
지방전기기사보	2
지방행정서기	27
지방사서서기	89
지방전산처리원	1

지방보건기원	3
지방행정서기보	-
지방사무서기보	28
지방보건기원보	1
기능직	757
지방기계장(6등급)	6
지방전기장(6등급)	3
지방통신장(6등급)	1
지방기계장(7등급)	16
지방전기장(7등급)	4
지방통신장(7등급)	7
지방기계원(8등급)	-
지방통신원(8등급)	-
지방기계원(9등급)	-
지방통신원(10등급)	3
지방전기원(10등급)	11
지방기계원(10등급)	21
지방윤선원(10등급)	36
지방교환원(10등급)	2
지방농림원(10등급)	2
지방보건원(10등급)	8
지방간호조무원(10등급)	4
지방사무보조원(10등급)	515
지방방호원(10등급)	118
○ 고등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총 계	712
별정직제	1
전산처리사(7급상당)	1
전사처리사(8급상당)	-
5급내지 9급 계	192
지방행정사무관	54
지방행정주사	59

지방행정주사보	46
지방보건기사보	3
지방전기기사보	3
지방행정서기	25
기 능 직	517
지방기계장(6등급)	5
지방전기장(6등급)	1
지방기계장(7등급)	17
지방전기장(7등급)	6
지방전기원(10등급)	24
지방기계원(10등급)	45
지방운전원(10등급)	4
지방교원원(10등급)	12
지방농림원(10등급)	4
지방사무보조원(10등급)	334
지방방호원(10등급)	65
고 용 직	2
○ 서울직업학교 및 아현직업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총 계	23
6급내지 9급 계	2
지방행정주사	2
기 능 직	20
지방기계원(10등급)	6
지방전기원(10등급)	1
지방운전원(10등급)	2
지방사무보조원(10등급)	9
지방방호원(10등급)	2
고 용 직	1
○ 서울정진학교(독수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총 계	23
6급내지 9급 계	3
지방행정주사	1

지방보건기사보	1
지방행정서기	1
<b>기 능 직</b>	20
지방기계장(7등급)	1
지방전기장(7등급)	1
지방운전원(10등급)	3
지방보건원(10등급)	4
지방사무보조원(10등급)	10
지방방호원(10등급)	1
2.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구청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군	
○ 교육구청 지방공무원 정원	
<b>총 계</b>	568
별정직제	1
전산처리사(7급상당)	1
<b>5급내지 9급 계</b>	330
지방행정사무관	9
지방건축기과	1
지방행정주사	85
지방건축기사	15
지방전기기사	4
지방기계기사	3
지방토목기사	5
지방보건기사	9
지방행정주사보	91
지방기계기사보	6
지방건축기사보	9
지방전기기사보	5
지방보건기사보	9
지방토목기사보	4
지방행정서기	54
지방전산처리원	9
지방건축기원	2

지방기계지원	-
지방행정서기보	10
지방전기지원보	-
기 능 직	237
지방기계장(7등급)	5
지방전기장(7등급)	1
지방운전원(10등급)	27
지방농림원(10등급)	1
지방사무보조원(10등급)	185
지방방호원(10등급)	18
○ 중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총 계	1,002
6급내지 9급 계	400
지방행정주사	198
지방행정주사보	124
지방행정서기	78
지방행정서기보	-
기 능 직	602
지방기계장(6등급)	1
지방기계장(7등급)	1
지방농림원(10등급)	5
지방사무보조원(10등급)	397
지방방호원(10등급)	198
○ 국민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총 계	3,137
6급내지 9급 계	478
지방행정주사	228
지방행정주사보	106
지방보건기사보	57
지방행정서기	87
기 능 직	2,659
지방기계장(7등급)	2

지방안전원(10등급)	416
지방사무보조원(10등급)	1,395
지방방호원(10등급)	846

**예 규**

서울특별시급수공사사무취급요령중개정요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9. 12. 18

서울특별시장 고 건 ㉞

○서울특별시에규제518호

서울특별시급수공사사무취급요령중개정요령 서울특별시 급수공사 사무취급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 제1절 제가항 제1목중 "관할구청시민봉사실"을 "관할수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 민원실"로 하고, 동항제2목중 "가옥대장"을 "건축물 관리대장"으로 "수도공사과"를 "공무과(인입급수관 개량공사는 누수방지과)"로 한다.

제2장 제1절 제가항 제1목중 "수도공사과장"을 "공무과장(인입급수관 개량공사는 누수방지과장)"으로, "시민봉사실"을, "민원실"로 하고, 동항 제3목중, "수도관리과"를 "영업과"로 "시민봉사실"을 "민원실"로 하고, 제5목중 "민원봉사실장"을 "민원실장"으로, "수도공사과"를 "공무과(인입급수관 개량공사는 누수방지과)"로, "수도관리과"를 "영업과"로 "시민봉사실"을 "민원실"로 하고, 제6목중 "수도공사과"를 "공무과(인입급수관 개량공사는 누수방지과)"로 하며, 동항 제7목중 "수도관리과장"을 "영업과장"

으로 "수도공사과"를 "공무과(인입급수관 개량공사는 누수방지과)"로 한다.

제2장 제1절 제다항 제1목중 "수도공사과장"을 "공무과장(인입급수관 개량공사는 누수방지과장)"으로 "제무과"를 "총무과"로 하고, 동항 제3목중 "수도공사과장"을 "공무과장(인입급수관 개량공사는 누수방지과장)"으로 하고, 동항 제6목중 "제무과"를 "총무과"로 하고, 동항 제7목중 "수도공사과장"을 "공무과장(인입급수관 개량공사는 누수방지과장)"으로, "수도관리과"를 "영업과"로 "제무과"를 "총무과"로 하고, 동항 제8목중 "수도관리과장"을 "영업과장"으로 하며, 동항 제9목중 "수도관리과"를 "영업과"로 한다.

제2장 제2절 제나항 제1목중 "수도공사과장"을 "공무과장"으로 하고, 동항 제2목중 "수도관리과"를 "영업과"로, "수도관리과장"을 "영업과장"으로 한다.

제2장 제3절 제가항중 "수도공사과장"을 "공무과장"으로, "수도관리과"를 "영업과"로 한다.

제2장 제7절 제가항 및 제라항중 "수도공사과장"을 "공무과장"으로 한다.

제3장 제2절 제나항중 "수도공사과장"을 "공무과장"으로 "수도관리과"를 "영업과"로 한다

제4장 제6절 제가항 및 제나항중 "시장"을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한다.

제4장 제8절 제다항중 "수도공사과장"을 "공무과장(인입급수관 개량공사는 누수방지과장)"으로, "제무과"를 "총무과"로 "제무

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4장 제9절 제가항 제1목 및 제3목중 "수도공사과장"을 "공무과장(인입급수관 개량공사시 누수방지과장)"으로 하고, 동항 제4목중 "재무과장"을 "총무과장"으로, "수도관리과장"을 "영업과장"으로 한다.  
 제5장 제3절 제나항 제2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의갑에 표시되어 있는 화살표의 방향으로 풀이 잘 흐르고 양수기 문자판을 바르게 읽을 수 있도록 양수기 좌우 형식을 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별지서식 제1호 내지 별지서식 제20호중 "구청장"을 "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수도관리과장"을 "영업과장"으로, "수도공사과장"을 "공무과장(인입급수관 개량공사시 누수방지과장)"으로, "시민봉사실"을 "민원실"로 "OO구청장"을 "OO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9. 11. 21부터 적용한다.

(서식제2호)

접 수 중	
서 류 명	급수공사신청서
접 수 번 호	제 호
접 수 년 월 일	19 년 월 일
수 도 사 업 소 민 원 실                      담 당 자                      ㉸	









(서식제6호)

**급수공사승인및공사비납입통지원표**

계	계장	과장	소장

처리번호 제 호

19

수요가 주소	시 구 동 연지 호				성명		
공사비 내역	공사비	시설분담금	도로복구비	기 타	계	납부기한	비고

처리번호 제 호

**급수공사승인 및 공사비납입통지서**

- 19 년 월 일자로 제출하신 급수공사 신청에 대하여  
19 년 월 일로 승인되었으니 양지하시고 아래 금액을  
19 년 월 일까지 ( 은행)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수공사 시공도중 현장시공 여건등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추가 공사비는 귀하가 부담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치 못할시는 공사가 중단 됩니다.
- 상기 납입 기일내 급수공사비를 납입치 못할시는 급수공사를 하실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구분	금 액	적 요
공사비		상수도공채( 원)은 별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분담금		
도로복구비		
기 타		
계		

19 년 월 일

○ ○ 수 도 사 업 소 장





(서식제11호)

급수공사비공동부담자명세서

공사명: 로 동 가 번지 호 의 급수공사

공사비: 일금 원정W

1.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별첨과 같이 공사비 공동부담자 명세를 제출하오며
2. 공사준공후 공동부담으로 부설된 급수관에서의 분기는 부담자 우선순위에 의하되 부담자 전원이 시공 완료된후는 분기권을 행사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첨 부: 공사비 공동부담자 명세 부

19

공동부담자대표

주소

상명

①

○ ○ 수 도 사 업 소 장 귀 하





(저식제16호)

착 공 계

- 1. 공 사 령
- 2. 계 약 금 액
- 3. 시 공 자
- 4. 계 약 년 월 일    19    년    월    일
- 5. 착 공 년 월 일    19    년    월    일
- 6. 준 공 기 한    19    년    월    일

위와 같이 착공하였기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19    년    월    일

시공업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①

○ ○ 수 도 사 업 소 장 귀 하

(서칙제17호)

준 공 계

1. 공 사 명

2. 계 약 금 액

계약년월일	19	년	월	일
착공년월일	19	년	월	일
준공기한	19	년	월	일
준공년월일	19	년	월	일

위와 같이 준공하였기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19    년    월    일

시공업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①

○ ○ 수 도 사 업 소 장 귀 하

(서식제19호)

계	계장	과장	소장	결
				재

현 장 보 고 서

공 사 명 :

위 공사시행증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이에 현장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19 . . . . .

감 두 원

직 명

성 명

1. 현 황
2. 문제점및대책
3. 처 리 의 건

○ ○ 수 도 사 업 소 장 귀 하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478호

도시계획용도지구(종치지구)변경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용도지구(종치지구)를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제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 하였기 같은법 제12조제4항의 규

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89. 12. 20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 용도지구(종치지구)변경결정

조서 : 별첨

나. 관계도서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비치 도면과 잔용

도시계획용도지구(종치지구)변경결정조서

번호	구분	명칭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변경	성북지구	계	7개소	2,059,064	감297,950	1,761,114		
			종로구 와룡동1번지 일대			16,720			
			종로구 해화동 5-99 일대			2,280			
			성북구 성북동 111-9 일대			70,000			
			" 145-55 일대			55,420			
			" 168 일대			41,200			
			" 186 일대			27,645			
		성북구 돈암동 45-154 일대			84,685				
2	변경	인왕지구	종로구 필운동 57-1 일대		839,750	감 3,446	836,304		
3	변경	금호옥수지구	계	4개소	888,545	감228,230	660,315		
			중구 신당동 40 일대			68,180			
			" 309-127 일대			67,277			
			" 432-9 일대			82,525			
			" 366-100 일대			10,248			
4	변경	남산지구	계	4개소	1,020,248	감 46,270	963,878		
			중구 남산동2가 25-24일대			25,380			
			중구 필동3가 25-1 일대			1,390			
			중구 장충동2가 193-80 일대			3,800			
			용산구 이태원동 243-36 및 258-98 일대			15,700			

번호	구분	명칭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5	변경	효창지구	용산구 효창동 5-131 일대	166,000	감 68,670	97,330	
6	변경	보광지구	용산구 한남동 606-1 일대	43,000	감 43,000	0	
7	변경	행당지구	계 3개소	268,500	감 24,100	244,400	
			성동구 마장동 382-25 일대		3,600		
			성동구 사근동 301-20 일대		20,500		
8	변경	자양지구	성동구 구의동 214 일대	166,500	감 27,800	158,700	
9	변경	농동지구	계 3개소	326,500	감 190,350	136,150	
			성동구 농동 397-1 일대		42,900		
			성동구 군사동 27-8 일대		74,310		
			성동구 송정동 38-1 일대		73,140		
10	변경	원곡지구	계 3개소	1,081,092	감 181,980	899,112	
			동대문구 이문동 349-9 일대		18,690		
			동대문구 회기동 3-140 일대		20,790		
			동대문구 회기동 103-270 및 청량리 61-65 일대		142,500		
11	변경	안암지구	계 5개소	1,026,200	감 187,456	838,744	
			성북구 종암동 57 일대		85,445		
			성북구 안암동5가 12 일대		56,194		
			성북구 안암동5가 152-191 일대		27,887		
			성북구 안암동2가 161 일대		3,354		
			성북구 안암동3가 137 일대		14,575		
12	변경	수유지구	도봉구 수유동 567-20 일대	1,727,000	감 93,600	1,633,400	
13	변경	안산지구	계 3개소	1,824,302	감 174,591	1,649,711	
			서대문구 홍제동 312-35 일대		39,511		
			서대문구 연희동 138-2 일대		7,290		
			서대문구 연희동 100-15 일대		53,320		

번호	구분	명칭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서대문구 연희동 110-2 일대		32,472		
			서대문구 연희동 51-66 일대		29,800		
			서대문구 창천동 97 일대		21,200		
14	변경	전농지구	동대문구 전농동 51-10 일대	492,500	감 12,150	480,350	

◎서울특별시고시제533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제403호 ('89. 8. 24)로 도시계획사업(도로)변경인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토목과,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9. . .  
서울특별시

가. 사업 시행위치 : 중구 충무로5가 55번지 - 84번지간  
 나.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사업의명칭 : 충무로5가 55번지 - 84번지간 도로 확장공사  
 다. 사업의 규모 : 폭 15m, 연장 116m  
 라.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청(중구청장)  
 마. 사업하수 및 준공예정일  
 ○당초 : 인가일로부터 1989. 12. 31까지  
 ○변경 : 인가일로부터 1990. 12. 31까지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 세목 조서 : 별첨  
 ▣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도면 게재 : 생략)

건물조서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저축면적(㎡)	소유자 및 관계인 주소·성명		비고
				주소	성명	
충무로 5가 78-8	블럭 스레트	점포및 주백	127.8	용산구 서빙고 동 241-21 신동아 아파트 3동 506호	장창순의 1인	소유권 분쟁 (소송중)

◎서울특별시고시제538호

검사기준의지정기준및업무처리등에관한  
고시증개정고시

검사기준의 지정기준 및 업무처리등에 관

한 서울시고시제25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1989. 12. 20

서울특별시 교건

- 다 음 -

검사기관의지정기준및업무처리등에관한  
고 시 증 개 정 고 시

제2조 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용기제조검사기관의 검사대상업무

- 최고충전압력 18.6kg/cm<sup>2</sup>이하의 엘.피.지를 충전하는 강제 용접용기로서 내용적 20L이상 125L미만의 용기. 단, 자동차 연료용 제외

제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엘.피.지 용기제조사는 충전시설이 현대화된 용기충전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용기제조사의 검사기준은 "용기제조사기관의 시설 및 검사기준" 동력자원부 가스 29233-1151호('88. 2. 24)을 적용한다.

별표1중 1)에 "용기제조사 전문검사기관"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용기제조사 전문검사관 : 3억원이상(동기부상 자본금임)

별표1중 5)의 제목 "검사장비"를 "검사장비 및 시설"이라 하고 5)의 본문 다음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용기충전업소가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엘.피.지 용기를 재검사 하교자 할때에 동력자원부 가스 29233-1151호('88. 2. 24)에 의한 용기제조사기관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

제1호(시행일) 이 고시는 198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902호

서울특별시시(구)공금수납대행기관지정

지방재정법 제64조 동시행령 제72조에 의거 공금 수납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동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9. 10.

서울특별시장

1. 수납대행기관 : 동남은행, 대동은행
2. 수납대행기관업무 : 서울특별시(구) 공금수납대행
3. 수납업무대행기간 : 동남은행 '89.11.1부터 대동은행 '89.11.7

◎서울특별시공고제995호

강남역부근도시설계안공람공고  
(구시의버스터미널부지)

1. 도시기능 및 미관증진을 위하여 장기 종합계획으로 수립한 강남역 부근 도시설계안을 건축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람일로 부터 3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축서도과 및 서초구청 건축과에 각각 비치하고 있으며, 이 도시설계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람기간안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989. 12. 12.

서울특별시장

가. 대상구역				
구	분	위	치	규 모
강남역 부근 (구 시외버스 터 미널 부지)		서초구 서초동	1319번지 일대 1320번지 1321번지 1326번지 1327번지 1328번지	면적 : 100,747㎡
<p>나. 도시계획 시행지침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지에 관한 사항 공동개발, 대지와 도로의교환</li> <li>○건축물에 관한 사항 층수, 용도,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벽면한계선, 필로티 조성</li> <li>○육외공간에 관한 사항 주차출입구, 주차출입금지구간, 공공공지, 공공조경</li> <li>○봉토에 관한 사항 보차혼용봉토, 보행전용도로, 보행우선도로</li> <li>○도시계획 도로의 개설</li> </ul> <p>다. 공람기간 : 1989. 12. 12부터 30일간</p> <p>라.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청(건축지도과) 및 서초구청(건축과)</p> <p>마. 관계도서 : 위 공람장소 비치도면과 같음.</p> <p>◎서울특별시공고제1010호</p> <p>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완료공고</p> <p>1. 서울특별시고시제535호('87. 7. 30)로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변경허가되고 동고시 제294호('89. 6. 20)로 변경허가되어 사업시행중인 서대문구 대현동 11-1일대 이화여자대학교의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되어 도시계획법 제57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p> <p>2.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도시경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9. 12. 15.</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p> <p>가. 사업시행지 : 서대문구 대현동 11-1 일대</p> <p>나. 사업의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분속시설 확충</p> <p>다. 사업시행면적 : 529,000㎡</p> <p>라. 건축연면적 : 기존 167,826.80㎡ 금회 282.64㎡ 제168,109.44㎡</p> <p>마. 사업시행기간 : '87. 7. 30-'89. 6. 30</p> <p>바. 사업시행자 : 서대문구 대현동 11-1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장 김옥길</p> <p>사. 준공도서 : 별첨(생략)</p>				



**구 고 시**

◎**송파구고시제25호**

**도시계획사업(시장)변경시행허가**

(1)송파구 고시 제15호('89. 9. 26)로 도시계획사업 변경시행허가된 관내 잠실동40번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권한의 위임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시장)변경 시행허가하고 이를 고

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송파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9. 12. 15

송 파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송파구 잠실동40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사업(시장)변경시행  
 · 명칭 : 한양유통  
 다. 사업규모

내 용	기 정 (㎡)	변 경 (㎡)	증 감 (㎡)
대 지 면 적	23,971.8	23,971.8	
연 면 적	42,660.298	42,660.298	
건 축 면 적	8,142.74	8,142.74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40번지 한양유통(주) 김 호 연  
 마. 착공 및 준공예정일  
 당초 : '88. 11. 1-'89. 12. 31

변경 : '88. 11. 1-'90. 4. 30  
 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여의의 권리명세 : 별항  
 ○ 토지조서

토지소재지	지 목	지 격	소 유 자	소유권여의의 권리명세
송파구 잠실동40	대	23,971.8㎡	한양유통(주)	농어촌 개발공사의 5개법인 (근저당 설정)

○ 건물조서

소 재 지	면 적	구 조	유 도	소 유 자
송파구 잠실동40	30,403.548㎡	철근콘크리트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한 양 유통(주)

○ 건물에 대한 소유권여의의 권리명세 :  
 농어촌 개발공사, 한국상업은행, 조흥은

행, 제일은행, 신한은행, 대우증권(근저당 설정)

●성동구고시제41호

도시공원 점용(연장)허가

- 1. 성동구 용답동 128-3(군자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점용·환경기준선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8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1항에 의거 도시공원 점용(연장) 허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2. 준제도시 - 성동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이를 준제인에게 보냅니다.

1989. 12. 20

성 동 구 청 장

- 가. 위 치: 성동구 용답동 128-3
- 나. 수허가자: 중구 남대문로2가 5 한국전력공사 지중선 사업차장
- 다. 점용기간: 영구 점용 1990. 1. 1-1990. 12. 31
- 라. 점용면적: 134.6㎡(영구점용 134.6㎡)
- 마. 목 적: 송전선 지하화
-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공원녹지과(전화 459-1395-7)으로 문의 바랍니다.

구 공 고

●강동구공고제5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34호('76.2.20)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된 신문국교(위례중)진입로 개설공사를 도시계획 사업(도로)실시 인가를 받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 공고합니다.

- 2.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가. 공람장소: 강동구청 토목과  
 나. 공람기간: '89.12.20~'90.1.4

1989. 12. 20

강 동 구 청 장

- 공 략 개 요 -

- 1. 사업명: 신문국교(위례중) 진입로 개설공사
- 2. 사업시행구간: 둔촌동166의3-150의11, 157의3-88의7(신문국민학교 신축예정지 주변)
- 3. 사업시행규모: 도로개설 B=6-23m L=692m
- 4. 사업시행자: 강동구청장
- 5. 사업확수일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년간
- 6. 기타사항: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공람 장소에 제출 및 문의 바람.

●중랑구공고제103호

도시계획사업(하수도)실시계획공람공고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456호('89.10.13)로 시설결정되고 중랑구 고시 제86호('89.10.18)로 지적승인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517-15의 8필지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신내동 지내 월도 평단 하수 압거 설치공사) 시행인가에 앞서 도시계획법 제2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공람합니다.
- 2.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

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3. 관계도서는 증랑구청 하수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으며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서는 공람 공고 기간내 공람 장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989. 12. 20

증 랑 구 청 장

- 공 랑 요 지 -

- 1.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증랑구 신내동 517-15, 신내동 502-14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신내동 지내 철도 횡단 하수암거 설치공사
- 3. 사업규모: 폭: 4미터, 길이: 95미터
- 4. 사업시행자: 증랑구청장
- 5. 사업착공 및 준공년월일: 인가일로부터 '90. 7. 15일
-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별첨 조서
- 7. 토지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43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별첨조서
- 8. 공람장소: 증랑구청 하수과 및 건설관리과
- 9.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10. 기타 상세한 사항은 증랑구청 하수과에 문의 바랍니다.

●증랑구공고제104호

도시계획사업(하수도)실시계획공람공고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456호('83.10.13)로 시설결정되고 증랑구 고시 제86호('89.10.18)로 지적승인된 서울특별시 증랑구 신내동521-31의 22필지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신내동 지내 하수 암거 설치공사) 시행인가에 앞서 도시계획법 제2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공람합니다.

- 2.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서는 개별 통지 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3. 관계도서는 증랑구청 하수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으며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서는 공람 공고 기간내 공람 장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989. 12. 20

증 랑 구 청 장

- 공 랑 요 지 -

- 1.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증랑구 신내동 521-31, 신내동 410-58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신내동 지내 하수암거 설치공사
- 3. 사업규모: 폭: 4미터, 길이: 520미터
- 4. 사업시행자: 증랑구청장
- 5. 사업착공 및 준공년월일: 인가일로부터 '90. 7. 15일
-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별첨 조서
- 7. 토지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43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별첨조서
- 8. 공람장소: 증랑구청 하수과 및 건설관리과
- 9.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10. 기타 상세한 사항은 증랑구청 하수과에 문의 바랍니다.

●권악구공고제151호

매질위탁관리허가 공고

서울특별시 권악구 봉천동 262-10 낙성대 공원 매질의 위탁 관리 계속 허가건에 대하여 도시공원법제6조 제2항에 의거 허가하고 같은법 제6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989. 12. 13

관악구청장  
 가. 위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262-10 낙성대 공원  
 나. 위탁관리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262-10 이승춘  
 다. 위탁사항: 매점1동(대지65평, 건평44.65평)  
 라. 위탁관리기간: '90.1.1-'90.12.31(1년간)

원내)  
 나. 위탁종류 및 명칭: 도시공원시설(정구장)관리 위탁  
 다. 수탁자: 서초구 반포동1245 반포(아) 95동 102호 배구설  
 라. 위탁기간: '90.1.1-'92.12.31  
 마. 위탁사항: 정구장 6면 및 부대시설 4,192㎡ 관리실 1동 64.66㎡

●서초구공고제495호

도시공원시설(정구장)관리 위탁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71호('83.2.5)로 도시계획사업(공원시설 설치)시행 완료된 도시공원시설(정구장)을 도시공원법 제6조 제2항에 의거 관리 위탁하였기, 동법 제6조 3항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1989. 12.

서 초 구 청 장

가. 위탁위치: 서초구 반포동 114-3(반포공

사업소공고





●위생처리장공고제23호

회계관계직인변경등록 및 폐기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7,8,9조 및 서울특별시 조례 제2517호('89. 11.3)에 의한 직제개편으로 아래와 같이 신규등록 및 폐기신고하고 동규칙 제11호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1989. 12. 16

서울특별시 위생처리장장

	신	규	폐	기
인				
공인명	서울특별시위생처리장 정수관	서울특별시위생처리장 수입금출납원	서울특별시위생처리장 분입정수관	서울특별시위생처리장 수입금출납직

직 인 등 록 조 서

회 계 명: 일반회계  
 관 서 명: 서울특별시위생처리장  
 직 명: 서울특별시위생처리장 정수관  
 사용개시일: 1989년 12월 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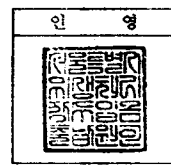
**직 인 록 기 신 고 서**

회 계 명 : 일반회계  
 관 서 명 : 서울특별시북부위생처리장  
 직 명 : 서울특별시북부위생처리장분임정수관인  
 사용 기간 : 75년 3월 1일부터  
 89년 12월 9일 까지



**직 인 등 록 조 서**

회 계 명 : 일반회계  
 관 서 명 : 서울특별시위생처리장  
 직 명 : 수입금출납원  
 사용개시일 : 1989년 12월 11일



**직 인 록 기 신 고 서**

회 계 명 : 일반회계  
 관 서 명 : 서울특별시북부위생처리장  
 직 명 : 분임수입금출납원  
 사용 기간 : 75년 3월 1일부터  
 89년 12월 9일 까지



**사업소고시**

◎한강공원관리사업소고시제35호

하천의 점용 허가기간 연장허가

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 허가기간 연장허가 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89년 12월 15일

하천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

서울특별시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인

허 가 년 월 일	위 치	지 목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허 가 를 받 은 자	
						주 소	성 명
'89.12.2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9번지선 (한강)	하천	5,750㎡	스케이팅장 설치	'89.12.20 - '90.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31	거한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계철, 안승학



◎1989년 12월 16일자		8급공무원 징계		령 제409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남송희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파면"에 처함.	한강공원관리사업소	지방행정 서기	
◎1989년 12월 20일자		기능직 공무원 면직		령 제470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박화숙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경찰국 (통신과)	교환원시보 (기능직10등급)	
경제선	"	경찰국 (면허과)	사무보조원(조무)시보 (기능직10등급)	
신문자	"	경찰국 (면허과)	지방사무보조원(조무)시보(기능직10등급)	
서울특별시				